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5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5. 3. 28.

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3. 28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해양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해양관광시설 설치에 따라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·정의,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해양관광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이용시간,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,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8조)

라. 편의시설 설치·운영,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,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: 검토의견 없음[복지지원과-8303(2025. 2. 28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370호
 - 가) 예고기간: 2025. 2. 20. ~ 3. 12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첨부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해양관광의 종합적·체계적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해양”이란 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.
2. “해양치유”란 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.
3. “해양관광”이란 건강·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과 연안에 인접한 육지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.
4. “해양관광시설”이란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해양관광 또는 해양치유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·공작물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해양관광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사업추진) 군수는 해양관광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해양관광, 해양치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·운영
2. 해양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
3. 섬 지역 관광객 수송 목적의 해운업·유선업·도선업 운영

4. 관련 분야 종사자·전문인력 및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

5. 그 밖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이용시간 등) ① 해양관광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, 안전관리 등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거나 일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료 등) ① 해양관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 반환할 수 있다.

제7조(이용료 감면) ① 해양관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·단체 및 기관은 별표 4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.

제8조(이용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관광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(危害)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그 밖에 해양관광시설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

제9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관광시설 내에 식당, 매점,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소, 그 밖의 편의시

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관광시설의 운영·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양관광시설의 운영·관리를 수탁받은 자에게 해양관광시설의 운영·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1]

해양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 (제3조 관련)

시설명	위 치	비고
고성군 해양치유센터	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08번지 일원	
와도 야영장	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572, 1582번지 일원	*방문자센터 포함
소형선박(해상택시)	고성군 하일면 임포항 ~ 자란도	

해양관광시설 이용시간 및 휴무일 (제5조 관련)

시설명	이용시간		휴무일
고성군 해양치유센터	프로그램	10:00 ~ 18:00	- 매년 1월 1일 - 설, 추석 당일
	숙박	14:00 ~ 익일 11:00	
	대관	10:00 ~ 19:00	
와도 야영장	14:00 ~ 익일 11:00		
소형선박(해상택시)	09:00 ~ 19:00		- 연중무휴

※ 단체(20인 이상)의 경우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이용시간 협의 가능

※ 이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

해양관광시설 이용료 및 환급(제6조 관련)

1. 고성군 해양치유센터

가. 이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		이 용 료	비 고
프로그램	자유의 바다	30,000	13종 시설 자유이용
	고성의 바다	60,000	자유의 바다 + 단체프로그램 1종 + 중식
	치유의 바다	1대1 90,000 2대1 70,000 3대1 50,000	자유의 바다 + 개별프로그램 1종 (+프로그램 추가 20,000) *1인 기준
숙박 (머무는 바다)	2인실	비수기 320,000 성수기 350,000	1박 기준 (고성의 바다, 2식 포함) *1인 제외 시 50,000원 공제 예) 4인실을 3인이 이용 시 비수기 590,000 성수기 650,000
	4인실	비수기 640,000 성수기 700,000	
대관 (빛나는 바다)	공유 오피스	1일 16,000 1개월 220,000	공용 와이파이, 팩스, 복사기 포함 *강의실 및 다목적홀 대관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40,000원 추가
	스튜디오	1시간 20,000	
	강의실(회의실)	4시간 170,000	
	다목적홀	4시간 300,000	

나. 대여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대 여 료	비 고
프로그램	수영복, 래쉬가드	4,000	1인/1일
	수영모	1,000	

다. 환급

(단위: 원)

구 분		환 급	비고
관리·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	-	이용료 전액	
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	①이용예정일 5일전	이용료 전액	
	②이용예정일 1~4일전	이용료의 90%	
	③이용일 당일 취소	이용료의 80%	
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	-	이용료 전액	

2. 와도 야영장

가. 이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	사용기준	요금		비고
		비수기	성수기	
신축동(2동)	1동/1박 (4인 기준)	100,000	120,000	
리모델링동(2동)		80,000	100,000	

나. 환급

(단위: 원)

구 분		환 급	비고
관리·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	-	이용료 전액	
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	①이용예정일 5일전	이용료 전액	
	②이용예정일 1~4일전	이용료의 90%	
	③이용일 당일 취소	이용료의 80%	
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	-	이용료 전액	

3. 소형선박(해상택시)

가. 이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	이 용 료	비 고
1인	10,000	왕복요금

나. 환급

(단위: 원)

구 분		환 급	비고
관리·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	-	이용료 전액	
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	①이용예정일 1일전	이용료 전액	
	②이용일 당일 취소	이용료의 80%	
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	-	이용료 전액	

※ 성수기: 매년 7. 20.부터 8. 31.까지와 금·토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

※ 비수기: 성수기 이외의 기간

해양관광시설 감면기준 (제7조 관련)

감면범위	감 면 대 상	비 고
1. 전액 감면	○ 국가, 경상남도, 고성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○ 교육,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○ 영유아: 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	
2. 100분의 50 감면	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○ 소인: 36개월 이상 12세 이하(초등학생)	
3. 100분의 20 감면	○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(명예 군민 포함) ○ 고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기업	

비고)

- ① 이용료를 전액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해양관광시설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(단, 영유아의 경우 ②참고)
-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을 이용할 때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, 감면적용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

**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관광진흥과장 장 찬 호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관광진흥법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6. 2. 3., 2023. 6. 20.>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

□ 해양레저관광진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해양레저관광”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·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가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

나.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

다.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

라.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

마.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위한 활동

바. 「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크루즈선을 이용한 활동

사.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

아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

자. 「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」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

차. 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

카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,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)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해양레저관광 교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·지원) 국가는 국민 건강·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,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·교육·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다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공익정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2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3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